

배포 2023. 9. 21.(목)

보도시점

(인터넷)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 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함에 응하다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교권 회복' 원년 실현,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교권 보호 4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교원지위법 신·구조문 대비표
 3. 초·중등교육법 신·구조문 대비표
 4. 유아교육법 신·구조문 대비표
 5. 교육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담당자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사	김명련 (044-203-6487) 조수원 (044-203-6488) 김선희 (044-203-649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제	주요내용
직위해제 제한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 제한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 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 개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함 -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법률에 추가함.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조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주제	주요내용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 확대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 교권보호위원회 비공개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학부모 제재 조치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초·중등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유아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원장이 책임짐(유치원 의견 받아 수정요)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 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 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유치원과 유치원은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육기본법

주제	주요내용
보호자의 의무	○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 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생략) <u><신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u>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u>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신 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

-----.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

② (현행 제14조의2제2항과 같음)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
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
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
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
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
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비용
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특별휴가) 제15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
를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

-----.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
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
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
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
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
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

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찰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

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

<삭 제>

<삭 제>

④ ----- 관할
청은-----

-----고발

할 수 있다.

⑤ 피해교원-----

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

보호자 등

피해교원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 범위·절차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② 제20조제3항

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관할청
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
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
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제18
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
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
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
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
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
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법」 제50조 및 「사립학교
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제19조에 따
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
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
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
치 등에 대하여 -----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관
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 ④ (생략)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신설>

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구체적인 내용 -----

--.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 ④ (현행 제16조의 3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
--) ①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교육활동보호센터-----
-----.

② ----- 교육활동보호센터-----

-----.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1. ~ 7. (현행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
-----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

-----.

⑦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3항 및 제4항--

--.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다.

⑨ (생 략)

<신 설>

⑪ (현행 제18조제9항과 같음)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
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
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
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
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
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3항에 따른 요
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조사) ①·② (생략)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② (현행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

<신 설>

런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

<u>제20조(권한의 위임) (생략)</u> <u>제21조(벌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22조(과태료) ①</u>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생략)</u>	<u>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u> <u>제33조(권한의 위임) (현행 제20조와 같음)</u> <u>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 <u>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u> <u>제35조(과태료) ① -----</u> <u>----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u> <u>-----.</u> <u>② (현행 제22조제2항과 같음)</u>
--	--

붙임 3

초·중등교육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u> <u>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u> <u>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u>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u>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u>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 ----- <u>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u>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생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u>
<u><신 설></u>	

<u><신 설></u>	<u>보지 아니한다.</u> <u>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u> <u>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u> <u>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u> <u>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u> <u>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u> <u>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u> <u>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u> <u>조치를 하여야 한다.</u>
---------------------------	---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u>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u>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 ----- <u>민원</u> <u>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u> <u>을 지도·감독하고</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 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 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 지 아니한다.
<신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 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현행	개정안
제12조(학습자) ①·② (생략)	제12조(학습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u>준수하여야</u>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 <u>지켜야</u> ----- ----- -----.
제13조(보호자) ① ~ ② (생략)	제13조(보호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u>